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3. . .<br>(제 회) |      |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이종호<br>(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3.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일정을 변경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정방식을 조정하여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데이터안심구역, 가치평가기관, 품질인증기관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3. 주요내용

가. 데이터 산업진흥 시행계획 확정 기한 조정(안 제3조 제2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을 데이터 산업진흥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계획 확정 기한을 조정함

나.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정 방식 변경(안 제6조 제3항)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위원회 위원장  
지명 및 위원 위촉의 주체를 현행 총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으로 변경함

다.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관련 위임규정 신설 등(안 제12조)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와 사전 협의 및 지정·지정 취소 후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지정취소,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라. 가치평가기관 지정·운영 세부사항 위임규정 신설(안 제14조 제6항)

가치평가기관 지정 세부 기준 및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마.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운영 세부사항 위임규정 신설(안 제20조의3 제6항)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세부 기준 및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0. 00. ~ 0. 00.)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1월 31일”을 “3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법 제11조제5항”을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비 등을”을 “시설·공간, 조직, 장비·시스템, 정책·절차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한”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으로, “통보”를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지정취소,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정 취소,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정취소,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략)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br>같음)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br>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br>매년 <u>1월 31일까지</u> 확정해야 한다.                                                                                                                     | ② -----<br>-----<br>----- <u>3월 31일</u> -----<br>---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① · ② (생략)                                                                                                                                                                             | ①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전문위원회는 <u>과학기술정보<br/>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데이터<br/>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br/>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br/>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br/>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br/>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u>데이터<br/>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u></u> | ③ ----- <u>과학기술정보<br/>통신부장관</u> -----<br>-----<br>-----<br>-----<br>-----<br>----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br/>지명한다.</u> |
| ④ ~ ⑥ (생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br>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br>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br>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신청을<br>받아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                                                                                   | 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br>운영 등) ① -----<br>-----<br>-----<br>-----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조성한 가상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립된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안  
대책을 갖추고 있을 것
2. 데이터 분석 · 활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  
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

-----. 다만,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_\_\_\_\_  
\_\_\_\_\_.

1. 제13조-----  
-----  
-----
2. -----  
-----  
-----  
----- 시설 · 공간,  
조직, 장비 · 시스템, 정책 · 절차를  
-----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지정

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⑥ (생략)

<신설>

제14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 ⑤ (생략)

<신설>

제20조의3(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 통보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또는 해당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지정취소,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정 취소,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3(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                                                |                                                                                                                                                                 |
|------------------------------------------------|-----------------------------------------------------------------------------------------------------------------------------------------------------------------|
| 지정 요건 등) ① ~ ⑤ (생 략)<br><br><u>&lt;신 설&gt;</u> | 지정 요건 등) ① ~ ⑤ (현행과<br>같음)<br><br><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br/>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 품질인증<br/>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정취소,<br/>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br/>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br/>정하여 고시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                  |
| 연 락 처            | (044) 202 - 6285 |